

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0. 10. 20(수)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정 헌 의원(찬성자 7인)

나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0년 9월 29일
- 회부일자 : 2010년 10월 8일

다. 상정일자 :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-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(2010.10.14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산업경제위원회 정 헌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도민이 경제생활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운용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의 개정(안 제5조제4항제4호)
-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5조제4항제5호, 안 제5조제5항)

3.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민병완)

- '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제4호의 “경제특별도”를 “충청북도”로 한다.

제5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5조제5항 중 “잔임기간”을 “남은기간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경제교육협의회 구성 등) ① ~ ③ (생략)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 1. ~ 3. (생략) 4. <u>경제특별도 경제정책의 홍보 및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</u> 5. <u>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</u></p> <p>⑤ 단체 대표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,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⑥ (생략)</p>	<p>제5조(경제교육협의회 구성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충청북도</u> ----- -----</p> <p>5. <u>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</u></p> <p>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남은기간</u>-----.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